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5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5월 14일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□ 제안이유

-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의 수탁자 자격을 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과 “사회복지법인”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
-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수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격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, 수탁자 참여 기회를 확대·제공하기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수탁자의 자격을 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함.(안 제9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위탁운영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가?	○ 그간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,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임.
○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조건은?	○ 2,000평 이상 부지와 건축비 10%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

- 조례 안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의 자격중 병원급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소규모 병원운영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도 수탁자격이 주어지므로 병상수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12호
의결 년월일	2007. 5. 31 (제136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5. 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의 수탁자 자격을 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과 “사회복지법인”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,
-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수탁자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격을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, 수탁자 참여 기회를 확대·제공하기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수탁자의 자격을 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함.(안 제9조 제1항)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</p> <p>1.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</p> <p>2. 사회복지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자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이고,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